

가.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

【작성예시 1.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】

◆ 신청인 기재란: 반드시 신청인 본인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

◆ 소속기관 기재란: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

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“✓”표를 합니다.		(앞쪽)		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・제8조에 따른		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 ○○ 학교	② 공무원 구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특정직(교육공무원)	③ 호봉(2025. 8. 31. 기준) 호봉: 45 별령연월일: 2025. 8. 1.	
	①-1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)	④ 직위(직급) 교사	⑤ 생년월일 1964. 6. 20.	
	⑥ 성명 홍길동	⑦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번길 경기아파트		
	⑧ 전화번호 (주택 또는 핸드폰)	⑨ 연금법상 재직기간 33년 1월	⑩ 정년일 2026. 8. 31.	
	⑪ 비위・형벌 사항 []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	<p>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자판 계류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</p> <p>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) 형량:)</p> <p>[]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</p> <p>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</p> <p>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</p>		
	⑫ 정년 구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령정년	⑬ 정년 62세		
	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 의 경과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기제 <input type="checkbox"/> 별정직	년 월	확인 인사담당관 (서명 또는 인)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령기금내상기간)	12 개월 (12 개월)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24,211,100	
	⑰ 비위・형벌 사항 확인 []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	<p>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</p> <p>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) 형량:)</p> <p>[]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</p> <p>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</p> <p>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</p>		
	확인 인사담당관 <교장 또는 학교장>	연금담당관 <부처장>	(서명 또는 인)	(서명 또는 인)

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25년 5월 2일

신청인

홍길동

첨부서류

- 나이스 인스카드(사본) 및 공무원연금내역서(사본): 연금법 적용 확인서 각 1부.
- 명예퇴직원 1부.
-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각 1부.
- 경력증명서 1부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.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학교장 (직인)

성명

(사인)

년 월 일
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 (직인)

성명

(사인)

경기도교육감 귀하

비고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·연금담당자가 적습니다.
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※ 160g/m² 또는 중질지(80g/m²)로 제작된 신청서면은 210mm×297mm(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)